영조대 분무녹훈도감의 운영과 녹권 제작

이 상 백*

1. 머리말
2. 분무녹훈도감의 업무와 운영
3. 분무공신녹권의 제작과 배포
4. 맺음말

초록: 『분무녹훈도감의궤』는 1728년(영조 4) 3월에 발발한 李麟佐(?~1728)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이들을 공신으로 책봉하는 과정을 수록한 의궤이다. 이 의궤는 영조대 공신의 녹훈과 상전, 공신에게 수여한 교서, 화상, 녹권의 제작과 반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구는 의궤의 기록을 바탕으로 분무공신녹권인 『二十一功臣會盟錄』과 『奮武原從功臣錄券』의 등장 배경, 제작, 반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분무녹훈도감의 업무와 운영을, 후반부에서는 분무공신녹권의 제작과 배포 과정을 정리하였다.

분무녹훈도감은 1728년 5월 事目 마련부터 1730년 5월 의궤도감의 의궤 편찬까지 2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분무녹훈도감에서는 공신 선정과 상전, 회맹제와 회맹연 개설, 공신에게 수여하는 교서, 녹권, 화상 제작과 배포 업무를, 의궤도감에서는 『원종공신녹권』의 배포와 재배포, 기공각 봉안 기록물의 제작과 봉안, 의궤의 편찬과 반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분무공신녹권은 『회맹록』 492건, 『원종공신녹권』 8,779건의 수량으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오류도 빈번히 발생하였다. 공신 선정에 오류가 계속되었고, 녹권에 어보를 안보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녹권이 절차대로 배포되지도 않았고, 배포된 녹권에도 오류가 확인되어 회수, 수정, 배포가 반복되었다.

이와 같이 『분무녹훈도감의궤』에서는 국가의 대사인 공신녹권의 제작과 배포의 업무 과정과 시행착오를 확인할 수 있다.

핵심어 : 분무공신, 분무녹훈도감, 분무녹훈도감의궤, 이십일공신회맹록, 분무원종공신녹권

*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1. 머리말

조선시대 국가에 중대한 공을 세운 이들은 공신으로 책봉되었다. 공신은 태조대의 開國功臣에서 영조대의 奮武功臣에 이르기까지 28회 책봉되었다. 공신에는 왕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의 신주를 승하한 왕의 신주와 함께 배향된 配享功臣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을 세워 책봉된 勳封功臣이 있다. 훈봉공신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지대한 공을 끼친 주요 공신인 친공신과, 친공신이 공을 세우는 데 보좌하며 작은 공을 세운 원종공신으로 나뉜다.

훈봉공신을 책봉할 때 국가에서는 임시 관서인 공신녹훈도감을 설치하여 공신들을 녹훈하였다. 공신에게는 공신임을 증명하는 교서, 화상, 녹권을 수여하였다. 이때 친공신에게는 교서와 화상을, 원종공신에게는 『원종공신녹권』을 수여하였고 친공신과 적장자에게는 『회맹록』을 수여하였다.[1] 공신 녹훈 업무는 공신 선정, 녹훈, 포상, 각종 행사 등을 총괄하는 국가의 대사였기 때문에 도감이 이를 주관하였다. 그리고 모든 업무가 종료되면 당시 공신 녹훈에 관한 전 과정은 의궤로 편찬되었다. 현존하는 공신녹훈도감의궤는 선조대의 『扈聖宣武淸難三功臣都監儀軌』와 『扈聖宣武原從三功臣都監儀軌』, 인조대의 『昭武寧社錄勳都監儀軌』와 『錄勳都監儀軌』, 숙종대의 『保社錄勳都監儀軌』와 『保社復勳都監儀軌』, 영조대의 『奮武錄勳都監儀軌』가 있다.

공신녹훈도감의궤는 공신의 녹훈 과정, 공신에게 수여하는 교서, 녹권의 제작과 반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고문서학, 서지학적으로 중요한 의궤이다. 이 의궤를 면밀히 검토하면 공신녹훈도감의 공신 선정, 상훈, 공신 증서 수여와 관련한 기록물 생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신에게 수여한 녹권은 분량이 수백, 수천 책에 이르기 때문에 이 의궤는 국가 주도 대량 출판 사업의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 즉, 공신녹훈도감의궤를 면밀히 조사하면 공신 선정부터 포상에 이르기까

1) 조선 초기에는 친공신에게 교서와 녹권을 모두 발급하였으나, 1453년 靖難功臣 이후로 친공신은 교서, 원종공신은 녹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호, 2015 「조선시대 공신문서의 현황과 개요」, 『韓國古文書精選』 6,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30면.

지 녹권 제작의 시대 배경, 그리고 준비에서부터 인출, 배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녹권 편찬과 간행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신녹훈도감의궤를 통해 공신 수여 녹권의 편찬, 간행, 배포 과정을 접근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2)]

이 논문에서는 공신녹훈도감의궤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 공신녹훈도감의 업무와 운영, 녹권 제작, 배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영조대에 李麟佐(?~1728)의 난을 진압한 이들의 공신 책봉에 관한 의궤이자 조선의 마지막 공신녹훈도감의궤인 『奮武錄勳都監儀軌』이다. 이 의궤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어람건 상, 하권 2책,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분상건 하권 1책이 현존하고 있다. 『분무녹훈도감의궤』에서는 공신의 선정, 상훈, 공신 수여 교서, 화상, 녹권의 제작과 반사, 회맹제 개설 등 영조대 분무공신의 녹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당시 공신에게 수여한 『奮武原從功臣錄券』, 『二十一功臣會盟錄』이 모두 현존하므로 의궤의 기록과 현존본의 형태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다.

녹권과 『회맹록』에 대해서는 간행본의 체제, 형식, 판식과 같은 형태 서지학적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었다.[3)] 그러나 녹권이 어떠한 배경, 어떠한 업무 체계 속에서 등장하였는지는 현재까지 주목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권의 체제, 형식, 판본은 서지학계에서 충분히 연구되었다고 판단하고, 『분무녹훈도감의궤』의 내용에 집중하여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녹권의 제작과 배포에 관한 간행 배경과 맥락을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한다. 전반부에서는 분무녹훈도

---

2) 이 의궤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옥영정, 2012 「의궤의 서지학적 연구 성과와 편찬·간행 관련 기록의 활용」, 『조선왕조의궤 현황과 전망』, 국립중앙박물관, 375-376면'에서 간략하게 언급되었다.

3) 서지학적으로 접근한 회맹록에 대한 연구는 정승민, 2005 「朝鮮時代 功臣會盟錄의 書誌的 硏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녹권에 대한 연구는 진나영, 2008 「朝鮮時代에 刊行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硏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朝鮮 前期 功臣錄券의 書誌學的 硏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이 대표되며, 각 회맹록, 녹권을 대상으로 형태 서지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

감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공신 녹훈을 총괄하는 분무녹훈도감과 의궤 편찬을 전담한 의궤도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당시 제작된 녹권인 『이십일공신회맹록』과 『분무원종공신녹권』의[4] 제작과 배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5]

2. 분무녹훈도감의 업무와 운영

조선시대 국가에 난이 발생하면 난을 제압한 신하들을 공신으로 녹훈하였다. 이 일은 임시관청인 공신도감 또는 녹훈도감에서 관장하였다. 도감은 공신의 녹훈, 의례 개설 등의 일을 전담했을 뿐 아니라 공신에게 수여하는 교서, 녹권, 회맹록 등을 제작, 배포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도감은 녹훈의 일을 마치면 의궤도감으로 변경되어 의궤를 편찬하고 모든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

1) 분무녹훈도감의 구성과 업무

1728년(영조 4) 3월 15일 이인좌가 청주 성을 함락하면서 시작된 이인좌의 난은 한 달이 채 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이인좌가 대원수가 되어 발발한 난은 청주에서 시작되어 목천, 청안, 진천을 거쳐 안성, 죽산으로 향하였는데, 3월 24일 안성, 죽산에서 四道 都巡撫使인 吳命恒(1673~1728)에 의해서 격파되었다. 오

4) 『분무공신녹훈도감의궤』에서 분무공신 중 친공신에게는 교서를 원종공신에게는 『분무원종공신녹권』을 배포하였다. 그러므로 엄밀히 살펴보았을 때 녹권은 『분무원종공신녹권』에 해당하며 당시 회맹제에 참석한 신·구공신과 적장자의 명단을 기록한 『이십일공신회맹록』은 녹권으로 보기 힘든 점이 있다. 그러나 이 의궤에서 두 책을 『원종녹권』과 『회맹녹권』으로 지칭하고 있고 두 종 모두 녹권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시 두 책 모두 녹권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두 책을 모두 녹권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5) 이 논문에서는 『분무공신도감의궤』를 반복적으로 인용하기 때문에 각주에서 『분무공신도감의궤』는 의궤로 인용 표기하고 상, 하권, 항목, 일자 등을 이어서 기술하도록 한다.

명항은 수시로 狀啓를 올려서 국왕에게 그간의 진행 과정을 보고하였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자 직접 포로를 이끌고 한성으로 향했다. 영조는 4월 3일에 敦化門 樓에서 포로를 받는 의식을 진행하였고[6] 4월 9일에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인물의 녹훈을 거행하라고 명하였다.[7]

녹훈을 위해서는 우선 元勳을 정해야 했다. 원훈을 정하기 위해서는 승정원에서 먼저 입계하여 대신을 命招하고 대신이 賓廳에 나오면 임금이 원훈의 이름을 써서 내린 뒤에 함께 의논하여 결정했다. 4월 20일에 원훈은 오명항으로 정해졌고 4월 20일부터 대신들이 빈청에 모여서 녹훈을 논하였다. 4월 26일에는 빈청에서 올린 錄勳單子에서 1등 1명, 2등 7명, 3등 7명으로 총 15명의 공신이 선정되었다.[8] 또한 국왕에게 올린 3개 勳號 중에서 '輸忠竭誠決幾効力奮武功臣'이 공신 호로 낙점되었다.[9]

공신과 훈호가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공신 책봉 업무를 위한 임시 기구인 녹훈도감이 설치되었다. 4월 26일에 난을 진압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오명항을 녹훈도감의 책임자인 당상으로 임명하였고[10] 녹훈도감은 공신과 그 후손을 관리하는 충훈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5월 5일에 오명항을 충훈부의 有司堂上으로 임명하였다.[11] 5월 6일에는 낭청, 감조관 각 4인을 임명하여 도감의 담당 직원을 갖추고[12] 5월 7일에 전례에 따라서 도감의 책임자로 豐陵君 병조 판서 趙文

6) 『승정원일기』 영조 4년 3월 25일 辰時, "戊申三月二十五日辰時, 上御敦化門樓, 受俘入侍時 …"

7) 의궤 상권, 「비망기」 1728년 4월 9일, "… 今則嶺捷又至, 出征將士, 其當不日旋凱. 待其復命, 錄勳等事, 令該曹擧行."

8) 의궤 하권, 「계사질」 1728년 4월 26일, "四月二十六日, 賓廳錄勳單子, 一等一人 … 二等七人 … 三等七人 …"

9) 의궤 하권, 「계사질」 1728년 4월 26일, "同日勳號望, 輸忠竭誠決幾効力奮武功臣落點."

10) 『영조실록』 17권, 영조 4년 4월 26일 병오 2번째 기사.

11) 의궤 상권, 「연설질」 1728년 5월 5일, "上曰, 兵判出仕贊成之後, 待其呈辭, 欲爲許遞矣. 卿等之所達如此, 姑爲許副, 而今此許遞, 盖因前之下敎而勉從, 非以贊成兼判書有所妨碍而然也. 今雖許遞, 旣已出肅本職, 又旣兼判書, 則贊成兼判書之例, 必無中廢之慮. 以此出擧條, 而勳府有司堂上之任, 依所達啓下可也."

12) 의궤 하권, 「계사질」 1728년 5월 6일, "五月初六日, 都監啓曰, 郎廳四員, 監造官四員, 竝依

命을 당상으로 한 명 더 임명하였다.[13]

업무 담당 직원이 정해지면 도감에서 운영 규정인 事目을 마련하였다. 직제는 녹훈도감의 일을 총괄하는 都廳과 하부기관인 삼방과 별공작을 두었다. 사목에 따르면 분무녹훈도감은 임시관청이므로 업무 수행을 위한 처소를 忠勳府에 마련하였고,[14] 녹훈도감의 업무 수행을 위한 印信은 예조에서 가져다 사용하도록 하였고[15] 업무 수행에 따른 급료 및 필요 물품 조달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분무녹훈도감에서 관장한 공신 녹훈의 중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친공신과 원종공신 선정과 賞典, 둘째는, 공신과 적장자가 참여하는 회맹제와 회맹연 개설, 셋째는, 친공신과 원종공신에게 교서, 녹권, 화상 등을 제작, 수여하는 업무이다. 분무공신도감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다른 조직의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였다.

첫째, 친공신 선정 업무는 국왕과 대신의 논의로 진행되었다. 친공신 선정은 분무녹훈도감이 설치되기 이전에 논의가 시작되었고 4월 26일에 결정되었다. 친공신의 녹훈은 임금과 대신이 筵說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고 분무녹훈도감은 결정 사항에 대한 감훈 단자 작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16] 이에 반해서, 원종공신은 임금과 대신의 연설에서 논의되기도 하였지만 분무녹훈도감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감에서는 원종공신의 등급에 따른 상훈의 별단을 마련하여 임금에게 보고, 시행하였으며[17] 각 도에서 군공이 있는 자들을 장

謄錄別單, 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13) 의궤 하권, 「계사질」 1728년 5월 초 7일, "都監啓曰. 取考都監謄錄, 則堂上一員, 自吏曹啓下後, 一員, 自都監又爲啓下, 自有前例. 今亦以豐陵君兵曹判書趙文命差下, 使之同爲察任, 何如? 傳曰, 允."

14) 의궤 하권, 「계사질」 1728년 5월 7일, "一. 都監處所乙良, 忠勳府排設爲白齊."

15) 의궤 하권, 「계사질」 1728년 5월 7일, "一. 堂上郎廳印信各一顆及工作監造官印信一顆, 禮曹取用爲白齊."

16) 의궤 하권, 「감결질」 1728년 5월 25일, "右甘結爲, 急急進排事. 今此錄勳時, 勘勳單字待令次, 楮注紙壹張, 白休紙一卷, 當刻內進排爲乎矣. 萬一遲晩, 甘罪不辭."

17) 의궤 하권, 「계사질」 1728년 7월 6일, "都監啓曰, 奮武功臣原從錄券頭辭敎書, 令藝文館分排撰出, 而錄券末端各等應行事例, 依祖宗朝事目, 別單書啓, 依此捧承傳施行, 何如?"

계에 수록하여 올리면 도감에서는 이를 검토하여[18] 원종공신의 별단을 작성하였다. 원종공신 대상자에 대한 별단은 지방으로부터 장계가 올라오면 보류하였다가 수합 후 비변사에서 回啓한 뒤 작성하였다.[19] 별단 작성 중 원종공신에 누락된 인물들이 상언 등을 올려 요청하면 분무녹훈도감에서는 이들을 원종공신에 녹훈할 수 있게 임금에게 다시 아뢰었다.[20] 또한 추가로 각 도에서 올린 장계를 수합하여 베껴서 다시 감정하고, 1, 2, 3 등으로 나눠서 작성한 원종공신의 별단을 임금에게 보고하였다.[21] 이렇게 하고도 또 다시 감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인물이 있으면 의논하여 공신으로 선정하였다.[22]

둘째, 공신 녹훈 과정에서 중요한 의식은 전국의 신·구공신과 적장자가 궁에 모여 임금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회맹제이다. 회맹제는 7월 18일에 개최되었다. 다음 날인 7월 19일에는 임금이 직접 공신에게 교서를 반사하고 회맹연을 설행하였고, 7월 20일에는 공신이 임금에게 감사를 표하는 전문을 올렸다. 의례에서 분무녹훈도감은 예조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 행사의 전체적인 일정, 절차는 예조가, 분무녹훈도감은 실무를 담당하였다. 예조가 회맹제와 관련된 사항을 임금에게 보고하여 제가를 받으면 도감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맹제 날짜,[23] 사목, 준비 사항,[24] 회맹연에서의 선온례 의식[25] 등에 대한 사안을 일일이 전달하였다.

---

18) 의궤 상권, 「연설질」 1728년 12월 19일, "所啓諸道軍, 功追來者, 尙未論功, 而續續追來者, 亦多秩秩區別正書, 若得餘暇, 卽當持入稟旨矣."

19) 의궤 하권, 「계사질」 1729년 2월 8일, "都監啓曰, 頃因大臣陳達, 原從別單, 姑爲留置, 待各道狀啓回啓後, 收入其中人事, 旣已判下矣."

20) 의궤 하권, 「계사질」 1729년 1월 15일, "都監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向前京畿陽智居忠翊衛李枝元等, 限內現身, 戶牌相考, 親呈的實是白在果, 觀此上言內辭緣 … 則雖無顯著之功, 似不無一時表奬之擧. 竝錄於原從, 何如?"

21) 의궤 하권, 「계사질」 1729년 2월 8일, "… 諸道狀聞之追後來到者, 自都監一一謄來, 參量勘定, 依舊例分爲一二三等. 別單塗擦連幅處, 竝踏印以入之意, 敢啓."

22) 의궤 하권, 「계사질」 1729년 3월 27일, "傳曰, 勘勳未參人員別單中, 曾已施賞及加資者, 付標以入. 甲子年軍功施賞單子, 亦爲入之."

23) 의궤 하권, 「내관질」 1728년 5월 일, "禮曹爲相考事. … 令日官推擇, 則來七月十八日爲吉云, 以此日擧行事知委, 何如? 啓依所啓施行事."

24) 의궤 하권, 「내관질」 1728년 5월 일, "禮曹爲相考事. 節啓下敎, 曹啓目, 來七月十八日, 奮

예조로부터 업무를 전달 받은 후 분무녹훈도감에서는 정해진 회맹제 날짜를 충훈부, 일방, 이방, 삼방, 별공작, 선공감, 예문관, 한성부, 이조, 병조에 알리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준비하였다.[26] 회맹제 준비에는 다양한 업무가 있었으나 분무녹훈도감 담당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공신 적장자들에게 회맹제 개설을 알리고 참석하도록 통보하는 업무였다. 회맹제 날짜가 5월에 정해지자 도감에서는 여러 고을에 통지해서 회맹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신인 누구의 적장자인지, 직책, 성명, 나이, 거주지, 생존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6월 그믐 안에 단자를 작성하여 올려 보내도록 각 고을에 통지하였다.[27] 회맹제 날짜가 정해진 후 도감에서는 회맹제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직책을 주고, 재직 인원의 인적 사항을 관리하였고[28] 회맹제에 필요한 물품 준비,[29] 회맹제 다음 날 공신에게 수여하는 교서 제작과 반사의례를 위한 물품, 인력 준비,[30] 회맹제 참석 인원들이 머무를 거처 마련,[31] 회맹

武功臣會盟祭親行敎是時, 應行諸事, 參考前例, 磨鍊開坐爲白去乎, 依此擧行事知委, 何如?"

25) 의궤 하권, 「내관질」 1728년 6월 일, "禮曹爲相考事. 啓下敎, 來七月十八日會盟祭翌日, 新功臣頒軸禮畢後, 參祭新舊功臣及執事, 並令會于殿庭, 以其祭餘酒肉, 如宣醞例分饋事, 已爲啓下矣."

26) 의궤 하권, 「감결질」 1728년 5월 일, "右甘結爲知委事. 禮曹關據, 會盟祭, 以七月十八日, 推擇啓下矣, 相考擧行爲乎矣. 萬一遲晩, 甘罪不辭. 忠勳府, 一房. 二房, 三房, 別工作, 繕工監, 藝文館, 漢城府, 吏曹, 兵曹."

27) 의궤 하권, 「이문질」 1728년 5월 일, "八道監司及兩都留守等了 … 開國以下, 各功臣嫡長及新功臣嫡長與衆子, 應參人員之散在列邑者, 坊坊曲曲, 急急知委, 來七月旬前及良, 一一上送爲乎矣, 某功臣某之嫡長是如, 職姓名年歲居住及有無故單子, 前期修正, 六月晦日內上送事, 道內各邑良中, 撥馬知委, 以爲及期書啓之地."

28) 의궤 하권, 「감결질」 1728년 5월 일, "依前例開國以下各功臣嫡長及新功臣嫡長與衆子, 應參人員之無實職者, 則各其洞任等, 一一知委爲旀, 在職人員, 則各其司掌吏等, 一一告課, 某功臣某之嫡長是如, 職姓名年歲居住及有無故單字, 來七月旬前及良, 修呈本府爲乎矣, 如有一員是乃, 無端不參之弊, 則當該部官及各該司掌吏等, 當入啓論罪是去乎, 除尋常惕念擧行爲乎矣."

29) 의궤 하권, 「이방의궤」 1728년 5월 일 감결, "今十八日會盟祭時, 當爲經夜, 燈燭諸具, 不可不預備."

30) 의궤 하권, 「일방의궤」 1728년 7월 5일 품목, "今此會盟祭翌日頒敎軸敎是時, 功臣賞賜等物, 同日曉頭, 各該司官員, 躬親領來, 待令于闕內爲旀, 同月十五日, 議政府習儀時段置, 亦依正日例待令事, 各該司捧甘, 何如? 堂上手決內, 依."

31) 의궤 하권, 「감결질」 1728년 7월 일, "今月十四日會盟祭習儀及十八日親祭敎是時, 應參舊

제 참석 인원들의 상격 마련[32] 등 회맹제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분무녹훈도감에서는 친공신에게 수여하는 교서와 화상, 회맹제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회맹록』, 원종공신에게 수여하는 『원종공신녹권』을 제작,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공신에게 배포하는 기록물은 일방, 이방, 삼방, 별공작에서 제작하였다. 삼방 중 일방은 織造와 교서 제작, 어제 어필 간행, 어필 현판 제작, 이방은 공신 화상 제작, 삼방은 공신에게 배포하는 녹권, 회맹축 등 인출, 별공작에서는 공신에게 수여하는 교서와 회맹축의 축, 함, 궤 등을 제작하였다. 각방은 1728년(영조 4) 5월부터 업무를 수행하였다. 각방에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잡물, 장인 등을 우선 마련한 후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는 일방, 이방, 별공작은 상호 교류를 통해, 삼방은 별도로 진행되었다. 일방에서는 먼저 교서축, 회맹축, 화상축에 사용되는 비단을 직조하여 이방으로 보냈고,[33] 이어서 교서축과 회맹축에 필요한 多繪를 제작하여 이방으로 보냈다.[34] 일방에서는 친공신 15명에게 내릴 교서의 초안을 작성하였고[35] 사자관이 회맹축의 정본도 서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36] 일방에서 작성한 문서는 모두 이방으로 보냈고 이방에서는 별공작에서 받은 교서축, 회맹축과, 필요한 다른 재료를 갖추어 배접을 마무리하여 축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37] 이방에서는 일방에서 받은 화상축에 이용될 비단과 화원인

功臣嫡長人員, 依幕假家, 今日內預爲造家待令爲旀."

32) 의궤 하권, 「계사질」 1728년 8월 1일, "故書啓單子中, 區別懸錄進參人員及未參, 而應受賞格者, 分爲別單, 兩度書入."

33) 의궤 하권, 「일방의궤」 1728년 6월 8일 품목, "本房所管敎書綃及會盟綃, 畢織卽時, 移送二房事, 曾已稟告是在果."

34) 의궤 하권, 「일방의궤」 1728년 6월 8일 품목, "敎書多繪十五次及會盟多繪一次, 今月初四日, 亦爲畢造移送二房是遣."

35) 의궤 하권, 「일방의궤」 1728년 6월 21일 품목, "同敎書十五次, 今方出草, 而所用筆墨, 旣無磨鍊備待之事, 臨時狼狽, 不可不參酌取用是乎等."

36) 의궤 하권, 「일방의궤」 1728년 6월 일 감결, "今此進上會盟軸正本書寫寫字官取才次, 以明日早食後, 有名字善寫者數三人擇送爲乎矣."

37) 의궤 하권, 「이방의궤」 1728년 5월 일 감결, "敎書軸會盟軸及畫像時, 所用膠末, 以謄錄所付計之, 則當爲十一斗是乎矣. 今番段隨所入以用次三斗八升瓮, 爲先稟報取來爲有如乎, 今此敎書軸會盟軸褙貼繪粧之時, 盡用無餘."

奏再奚(1691~1769) 등이 그린 공신 화상을 배접하고,[38] 별공작에서 제작한 화상축과 落纓을 갖춰 화상 제작을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인다.[39] 이방에서 완성된 교서축을 다시 일방으로 보내면 일방에서는 교서에 어보인 '施命之寶'를 안보하고[40] 별공작에서 제작한 교서궤에 봉안하여 회맹제 다음날 공신에게 반사하였다.

각각의 축이 제작되면 이방의 업무는 끝난다. 일방에서는 회맹제 이후 신하가 임금에게 올릴 謝箋文을 제작하고[41] 관인 날인까지 담당하였다.[42] 회맹제 이후 8월부터는 여러 공신에게 하사하는 어필 간행 업무와[43] 8월 중순부터는 어필 현판 제작도 수행하였다.[44] 8월 27일에는 일방, 이방, 별공작의 모든 업무가 끝나고 완성된 회맹축과 화상축은 별공작에서 제작한 궤에 봉안하여 회맹축은 임금에게 진상하고, 화상축은 각 공신의 집으로 보냈다.[45] 한편, 삼방에서는 오랜 기간 공신 『회맹록』과 『원종공신녹권』을 제작, 배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38) 의궤 하권, 「이방의궤」 1728년 5월 일 감결, "敎書會盟畫像軸後褙次毛邊紙, 比前謄錄減數取用爲有如乎."

39) 의궤 하권, 「이방의궤」 1728년 5월 일 감결, "畫像入盛櫝子, 黑漆上下廣木及左右山柚子軸. 別工作. 內裹次, 紅紬袱四幅付, 各長二尺八寸. 外裹次, 紅木綿袱五幅付, 各長四尺. 縫造次, 紅鄕絲, 每一部一錢式. 畫像纓子, 每一部所入. 紅眞絲六錢草綠眞絲三錢, 紫的眞絲五分, 柳綠眞絲五分, 槊次紅綿絲七錢. 以上濟用監."

40) 의궤 하권, 「일방의궤」 1728년 7월 15일 감결, "今此奮武功臣十五員, 敎書安寶次, 詣闕時所用朱紅, 當刻內進排爲乎矣."

41) 의궤 하권, 「일방의궤」 1728년 7월 16일 감결, "今此奮武功臣謝箋文磨鍊次, 事知書員金東胄, 當刻內定送爲乎矣."

42) 의궤 하권, 「일방의궤」 1728년 7월 18일 감결, "今月二十日未明時, 本都監謝箋文成貼時所入朱紅一錢, 進排於平市爲乎矣."

43) 의궤 하권, 「일방의궤」 1728년 8월 3일 감결, "今番諸功臣賜與御筆, 開刊奉安于勳府, 十五功臣各一件式模藏事, 榻前定奪爲有置."

44) 의궤 하권, 「일방의궤」 1728년 8월 17일 감결, "御筆懸板所入每柒, 當刻內從實入進排爲乎矣."

45) 의궤 하권, 「계사질」 1728년 8월 27일, "都監啓曰, 會盟軸已爲繕寫, 會盟錄券亦旣印粧, 各盛櫝子進上之意, 敢啓. … 都監啓曰, 會盟軸及功臣畫像, 旣已畢役, 一二房及別工作今無所事, 郎廳監造官爲先減下. 而原從功臣未及磨勘, 三房依前例仍存, 待從勳啓下後, 印監錄券之意, 敢啓. … 都監啓曰, 諸功臣畫像, 今已粧軸, 自都監分送各家. 而時在外任人員, 則以都監員役, 給馬下送之意, 敢啓."

2) 의궤도감의 업무

분무녹훈도감은 1729년(영조 5) 5월 25일 업무 종료 후 停罷되었다. 그리고 의궤 편찬을 위해 분무녹훈도감은 儀軌都監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처소는 충훈부에서 平市署로 옮겼고 낭청은 분무녹훈도감의 낭청을 그대로 차임하였다.[46] 의궤도감의 목적은 분무녹훈도감 업무 후 관련 기록을 모아서 의궤를 편찬하고 봉안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분무녹훈도감의 의궤도감은 『분무녹훈도감의궤』 편찬뿐만 아니라 『분무원종공신녹권』 제작, 배포 관련 업무, 충훈부의 紀功閣 봉안 『御諱勳案』과 신공신 명단 수록 현판 제작의 일까지 담당하였다. 의궤도감이 이와 같이 다양한 업무를 계속하게 된 이유는 녹훈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은 종료되었으나 『분무원종공신녹권』의 인출과 배포와 같은 일부 업무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조직은 줄었으나 일은 병행한 것이 아닌가 한다.[47]

의궤도감에서 담당한 업무를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무원종공신녹권』의 배포와 재배포이다.[48] 분무녹훈도감의 삼방에서는 『회맹록』과 『분무원종공신녹권』의 인출을 담당하였는데 『분무원종공신녹권』은 8,878건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했다. 분무녹훈도감에서 일방, 이방, 별공작은 1728년(영조 4) 8월에 이미 일을 마쳤으나 당시 삼방에서는 녹권의 간인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49] 1729년 5월 분무녹훈도감이 정파된 이후 『분무원종공

---

46) 의궤 하권, 「계사질」 1729년 5월 25일, "都監之役, 旣已完畢, 今姑停罷, 儀軌都監當設置. 故儀軌纂修時, 應行節目, 依前磨鍊, 別單以入之意. 敢啓. … 奮武錄勳都監, 今此錄勳儀軌纂修時, 應行節目, 依前例磨鍊後錄爲白去乎, 依後使內白, 何如? … 一. 錄勳都監, 旣已畢役, 而儀軌纂修時, 仍以儀軌都監稱號爲白齊. 一. 處所乙良, 平市署排設爲白齊. 一. 儀軌文書次知郎廳, 以都監郎廳二員, 仍差檢察爲白齊."

47) 의궤도감이 의궤 편찬뿐만 아니라 녹권의 수정, 배포, 기공각 기록물 생산, 봉안 등 다양한 일을 병행한 것은 특징적인 점이지만 『분무녹훈도감의궤』에서만 확인되는 것인지, 공신녹훈도감의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향후 현존하는 공신녹훈도감의궤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의궤의 성격과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48) 이 사안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49) 의궤 하권, 「계사질」 1728년 8월 27일, "都監啓曰, 會盟軸及功臣畫像, 旣已畢役, 一二房及

신녹권』은 6월에서야 완전히 완성되었는데 그전에 완성된 녹권은 차례로 충훈부에서 의궤청으로 이송되어[50] 5월부터 원종공신에게 반사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51] 그러나 반사한 녹권에 오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잘못된 녹권을 개장해서 다시 배포해야 하는 일이 생겼고 의궤도감에서는 잘못된 녹권을 회수하고 1728년(영조 4) 8월에 녹권의 잘못된 부분을 개장, 어보를 안보하여 반사하는 일을 진행하였다.[52]

둘째, 의궤도감에서는 충훈부의 紀工閣에 올릴『御諱勳案』1건,『훈안』책자 1건, 공신 현판 1건, 예문관에 올릴『훈안』책자 1건을 제작하였다. 이 일은 1729년 7월『분무원종공신녹권』반사가 마무리 되면서 녹훈에 관한 일이 완료되었다고 여겨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53] 7월에는 업무 시작을 위하여 물목을 갖췄고 화원 1인이 7월 20일부터『훈안』의 인찰선을 긋고 사자관 2인이 7월 25일부터 정서하였다.[54] 책자는 실물이 현존하지 않아서 어떠한 형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마련한 물목들을 볼 때 주홍으로 인찰하고 그 위에 글을 쓴 필사본으로『어휘훈안』은 첩형태, 책자는 선장본 형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공각에 봉안할『어휘훈안』은 상, 하권으로 책지는 자문지, 표지는 藍大緞, 제목은 白綾으로 마련하고 多紅方紗紬를 제목에 둘러서 부착하였다.[55]『훈안』책자는 책지는 大好紙, 표지는 草綠大

別工作今無所事, 郎廳監造官爲先減下. 而原從功臣未及磨勘, 三房依前例仍存, 待從勳啓下後, 印監錄券之意, 敢啓."

50) 의궤 하권,「의궤도감등록」감결질 1729년 6월 일, "今此原從錄券自忠勳府移送於儀軌廳是如乎, 負持軍十五名, 明日待罷漏待令于忠勳府事."

51) 의궤 하권,「감결질」1729년 5월 일, "今此原從錄券, 今月晦日爲始頒給爲如乎."

52) 의궤 하권,「의궤도감등록」감결질 1729년 8월 일, "今此原從錄券改張安寶爲去乎, 明日未明時, 所裹紅袱三件段, 待令于都監爲旀."

53) 의궤 하권,「의궤도감등록」품목질 1729년 7월 일, "錄勳之役, 今已完畢矣."

54) 의궤 하권,「의궤도감등록」이문질 1729년 윤7월, "寫字官二員印札畫員一員, 依節目啓下使役爲去乎, 寫字官二員段, 自七月二十五日始役爲始, 限一朔料布爲先磨鍊上下爲旀, 畫員一員段, 自七月二十日始役爲始, 閏七月初五日至, 料布亦爲磨鍊上下向事."

55) 의궤 하권,「의궤도감등록」품목질 1729년 7월 일, "奉安御諱勳案一件上下卷所入, 咨文紙十六張, 衣次藍大段, 全骨二尺, 後褙次楮注紙四張, 題目次白綾長五尺廣三寸, 紅挾次多紅方紗紬長一寸廣三分."

緞, 제목은 역시 백능으로 마련하여 다홍방사주를 둘러서 부착하고 多紅眞絲로 제책하였다.[56] 예문관에 올리는 공신 책자는 책지는 小好紙, 표지는 황염지로 만들고 다홍진사로 책을 엮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57] 특히 기공각 봉안용『어휘훈안』은 훈안을 쌀 보자기를 마련하고[58] 훈안을 도침하고[59] 봉안할 吉日을 정하여[60] 11월 초 4일에 彩輿로 이동하여 기공각에 봉안하였다.[61]

한편 기공각에 걸 공신 현판은 현존하지 않아서 어떠한 형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7월에 현판 제작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고[62] 8월에 현판을 채색하고[63] 9월에 현판의 휘장을 별도로 제작하고[64] 10월부터는 현판에 글씨를 새기고 조각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65]

셋째, 의궤도감은 주된 업무인 분무공신 녹훈의 전말을 수록한『분무녹훈도감의

---

56) 의궤 하권,「의궤도감등록」품목질 1729년 7월 일, "册子一件所入, 大好紙一卷十七張, 印札次朱紅五錢, 衣次草綠大段全骨二尺二寸, 後褙次楮注紙二張, 題目次白綾長六寸廣一寸, 紅挾次多紅方紗紬長六寸廣三分, 片䏰脂二片, 粧縩次多紅眞絲三錢."

57) 의궤 하권,「의궤도감등록」품목질 1729년 7월 일, "藝文館上功臣册子一件所入, 小好紙一卷十七張, 印出次朱紅五錢, 衣次黃染紙半張, 後褙次楮注紙三張, 粧縩次多紅眞絲二錢."

58) 의궤 하권,「의궤도감등록」감결질 1729년 9월 일, "擧行事. 勳案內外裹袱及功臣懸板揮帳縫造次, 善手針綿婢二名, 初五日爲始, 限畢役, 定送事."

59) 의궤 하권,「의궤도감등록」감결질 1729년 10월 일, "紀功閣奉安勳案搗砧次, 壯丁軍八名架子一部紅袱一件, 明日待罷漏, 待令于都監事."

60) 의궤 하권,「의궤도감등록」감결질 1729년 10월 일, "紀功閣勳案奉安吉日, 以來月初五日內推擇以送事."

61) 의궤 하권,「의궤도감등록」감결질 1729년 11월 일, "今初四日平明時, 自儀軌廳, 御諱勳案移安于紀功閣爲如乎, 彩轝一部, 熟麻條所四艮衣, 擔持軍引路軍九名, 架子軍二名, 紅袱一件, 同日待罷漏, 待令于都監事."

62) 의궤 하권,「의궤도감등록」품목질 1729년 7월 일, "紀功閣所揭新功臣縣板, 亦有一時造成之例矣. 所入雜物磨鍊後錄爲去乎, 各該司良中, 捧甘取用, 何如?"

63) 의궤 하권,「의궤도감등록」감결질 1729년 8월, "今此新功臣懸板塡彩所用, 沙大貼三竹, 甫兒一竹, 沙鉢一竹, 沙莫子二介, 彩器所盛層櫃一部, 木道子二十介, 用後還下次, 進排事."

64) 의궤 하권,「의궤도감등록」감결질 1729년 9월, "擧行事. 勳案內外裹袱及功臣懸板揮帳縫造次, 善手針綿婢二名, 初五日爲始, 限畢役, 定送事."

65) 의궤 하권,「의궤도감등록」감결질 1729년 10월 일, "紀功閣所揭功臣懸板刻字次, 善手刻手匠二名, 明日平明時定送事. … 紀功閣所揭功臣懸板雕刻次, 善手雕刻匠一名, 明日定送事."

궤』를 편찬하였다. 다만 분무녹훈도감의 업무가 완료되지 못하여 다양한 업무를 겸했기 때문에 의궤 편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의궤를 편찬했다. 분무녹훈도감이 정파한 1729년 5월에 의궤도감에서는 의궤를 찬수하기 위한 잡물을 마련하였고[66] 7월부터 『어휘훈안』, 현판 제작과 동시에 의궤 찬수를 시작하여 1년이 지난 1730년(영조 6) 5월에서야 의궤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67] 이렇게 오랜 기간 의궤를 찬수한 배경에는 작은 조직인 의궤도감에서 다양한 업무를 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권 257장, 하권 259장 2책으로 구성된 의궤의 분량과 분무녹훈도감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내용이 의궤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도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의궤는 보통 도감이 정파되면 도감에서 생산한 문서, 또는 도감과 다른 기관과의 업무 상 주고받은 문서와 기록을 의궤도감에서 정리하여 편찬한다. 그러나 의궤의 상권에는 분무녹훈도감이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의궤도감에서는 관련 기록들을 인수하여 베껴 쓰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되었을 것이다.

의궤의 상권에는 이인좌의 난과 관련된 죄인을 심문하고 추국하는 推案秩, 난의 진압을 위해 오명항을 비롯한 관리들이 임금에게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고하는 狀啓秩, 임금이 내린 備忘記秩, 임금이 신하들과 입시한 자리에서 논한 내용인 筵說秩이 실려 있다. 하권에는 녹훈의 실무를 담당한 관청들이 임금에게 올린 보고 문서를 수록한 啓辭秩에서부터, 임금이 공신에게 하사한 교서의 전체 내용, 분무녹훈도감과 다른 기관과의 주고 받았던 문서들, 회맹제, 회맹연, 교서 반사 절차, 『회맹록』과 『원종공신녹권』 제작에 이르기까지 녹훈도감의 실제 업무와 관련한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다. 즉, 분무녹훈도감의 업무에 대한 내용은 하권에 수록되어 있고 상권에는 이인좌의 난의 진압, 역적의 처벌, 녹훈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분무녹훈도감의 실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의궤 편찬을 위한 기록물

66) 의궤 하권, 「의궤도감등록」 품목질 1729년 5월 일, "今此錄勳儀軌纂修時所用紙地筆墨及雜物, 依謄錄後錄爲去乎, 急速進排事."

67) 의궤 하권, 「의궤도감등록」 품목질 1730년 5월 일, "庚戌五月日, 御覽謄錄二冊所入, … 斯速進排, 以爲粧冊事, 捧甘各該司, 何如?"

수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예로 1729년(영조 5) 12월에 의궤의 出草가 거의 이루어졌으나 의금부에서 추안 문서를 보내지 않아서 추안 문서를 제외하고 정서를 시작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68] 의궤 상권의 절반 정도가 추안질이므로 기록을 수합하고 추안을 정서하여 의궤를 완성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분무녹훈도감의궤』는 史庫에 봉안하는 다른 의궤들과 달리 어람건 1건 2책과 충훈부와 의정부에 보관하는 분상건 각 1건 2책씩 총 3건 6책만 편찬하였다. 의궤도감에서는 공신의 녹훈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와 기록을 정리하여 초안을 먼저 작성하였다. 의궤 중 어람건은 인찰 화원 1명이 인찰 공책지를 그렸고 사자관 2명이 정본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충훈부, 의정부 분상건은 목판으로 찍은 인찰 공책지에 서사 4명이 필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69] 1730년(영조 6) 5월에는 의궤 내용이 모두 작성되어 의궤를 장황하고 편철하여 책자 형태로 제작하였다. 어람건은 저주지로 배접하고 草綠大段으로 만든 표지에 白綾에 제목을 묵서하여 붙이고, 무늬를 새긴 놋쇄 변철에 국화동과 원환을 갖춰서 편철하였다. 분상건은 저주지로 배접하고 붉은 무명목으로 표지를 갖추고 편철하고 원환을 갖춰서 제작하였다. 그 중 어람건은 금전지를 갖춘 홍색 보자기로 책을 싸고, 홍색 함에 봉안하고 다시 금전지를 갖춘 홍색 보자기로 싸서 임금에게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70]

의궤가 완성되면서 분무녹훈도감의 모든 업무는 마무리 되었다. 분무녹훈도감의 업무 기간은 사목을 마련한 1728년(영조 4) 5월에서 의궤를 완성한 1730년 5월까지 2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

68) 의궤 하권, 「의궤도감등록」 12월 일, "儀軌文書幾盡出草是乎矣, 禁府推案文書, 尙不修送, 若待推案之來, 一時正書, 則畢役無期."

69) 의궤 하권, 「계사질」 1729년 5월 25일, "一. 御覽謄錄, 寫字官二, 印札畫員一, 書寫四, 書吏二, 庫直一, 使令二乙良, 令戶兵曹料布題給爲白齊."

70) 의궤 하권, 「의궤도감등록」 1730년 5월 일 품목, "御覽謄錄二冊所入, 衣次草綠大段四尺八寸, 題目次白綾長一尺二寸廣四寸, 隔紙草注紙二張, 褙貼次楮注紙四張, 豆錫片金起畫四箇, 菊花童及釘次各二十箇, 圓環二箇. 各處所上謄錄四冊所入, 紅染木九尺六寸, 隔紙及褙貼次楮注紙十二張, 片鐵八箇, 釘次二十四箇, 圓環四箇. 及進上時所用, 紅函一部, 內外裹紅袱具金錢紙二件, 膠末三升, 燒木一丹等物, 斯速進排, 以爲粧冊事, 捧甘各該司, 何如?"

3. 분무공신녹권의 제작과 배포

분무녹훈도감의 삼방에서는 오랜 기간 녹권 인출을 전담하였다. 삼방이 제작한 녹권은 『이십일공신회맹록』과 『분무원종공신녹권』으로 회맹제 종료 후 회맹제에 참여한 신·구 친공신과 적장자에게는 『이십일공신회맹록』을, 원종공신에게는 『원종공신녹권』을 배포하였다. 두 종의 녹권은 제작 과정이 상당히 방대하여 분무녹훈도감 업무의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원종공신의 명단은 지속적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간행 수량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이 두 녹권이 제작 · 배포되는 실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녹권의 편찬과 인출

『이십일공신회맹록』과 『분무원종공신녹권』은 녹권의 특성상 수록 인원의 명단을 확정하는 일이 우선 진행되어야 했다. 『회맹록』에는 회맹제에 참석한 인물이 수록되기 때문에 참석자 명단이 우선 마련되어야 했다. 그래서 회맹제 참석자는 각 고을에서 사전에 명단과 신상 정보를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여 회맹제 시작 전인 6월에 참석자의 별단이 마련되었고,[71] 회맹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인원들도 『회맹록』에 별도로 사유와 명단을 수록하도록 하여 8월에 『회맹록』 수록 명단이 확정되었다.[72] 『회맹록』의 수록인원이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분명하게 정해진 것에 비해서 『원종공신녹권』의 수록 명단 확정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원종공신의 명단은 각 도의 장계를 수합해서 공이 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마련하였지만, 잘못 기입된 명단, 누락된 명단 반영 등으로 인해서 다음 해인 1729년(영조 5) 2월에서야 별단을 갖추게 되었다. 게다가 또다시 누락된 인원이 확인되어 3월에 추가로 勘勳하여 최종 수록 인원을 갖추게 되었다.

---

71) 의궤 하권, 「품목질」 1728년 6월 일, "今此會盟祭時, 京外新舊各功臣嫡長等, 進不進事, 八道列邑知委, 關文所用紙地及啓目單字紙, 筆, 墨等物 … 各該司良中依此進排事, 捧甘何如?"

72) 의궤 하권, 「계사질」 1728년 8월 1일, "今此會盟時, 因疾病事故應參而未參者, 年幼未參者, 竝依舊例, 列名載錄於會盟錄末端, 使後之觀者, 尋知厥由, 似爲得當, 故別單書入之意, 敢啓."

녹권 제작은 분무녹훈도감의 삼방에서 담당하였는데 삼방의 기록은 일자를 밝히지 않아서 어떠한 업무가 언제 진행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삼방에서는 업무를 위해서 5월에 필요한 물건을 갖추고, 각 책에 수록될 인원의 명단을 확정한 이후에 『회맹록』과 『원종공신녹권』 순으로 인출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회맹제에 참여한 인원이 정해져있고 전체 참여자 명단을 동일하게 인출한 『회맹록』과 달리 누락된 인물의 계속된 입록과 녹권마다 수급자를 달리 넣어야하는 『원종공신녹권』은 인출 기간이 훨씬 길었다. 삼방 의궤에 따르면 『회맹록』과 『원종공신녹권』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73]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회맹록』은 대전과 세자궁 진상건 2건과 반사건 492건을 제작하였다. 진상건의 책지는 초주지로 장흥고에서 수급하였고[74] 반사건의 표지는 초주지, 책지는 저주지로 장흥고와 사섬시로부터 마련하였다.[75] 『원종공신녹권』은 반사건 8,779건을 제작하였다. 필요한 종이는 호조에서 지정[卜定]한 종이와 사섬시로부터 백휴지와 저주지를 받아서 책지와 표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76] 수천 책의 인출에는 종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였는데 도감에서 『원종공신녹권』의 인출지를 마련하는 일은 상당히 고된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종공신녹권』의 인출지 마련에 드는 비용은 보통 역적 집안의 재산을 가져다 썼다. 그리고 『원종공신녹권』은 수급자에게 직접 비용을 받아서 인출하였고 일등 및 朝士, 折衝將軍 이상으로 邊將을 역임한 사람, 액정서에 소속된 관원, 승정원과 의금부의 하인에게는 예외적으로 비용을 거두지 않았다. 그 외 사람들에게는 각각 비용을 거둔 뒤 인출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로가 있는 사람 전체에게 종이 값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인출 책지 자체의 비용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보

73) 삼방의궤에서는 『회맹록』과 『원종공신녹권』을 구분하지 않고 인출 과정을 대부분 작성하고 있다.

74) 의궤 하권, 「삼방의궤」 1728년 5월 일 품목, "一. 大殿世子宮進上會盟錄二件所入, 草注紙二卷十張 … 戶曹, 工曹, 長興庫, 豊儲倉."

75) 의궤 하권, 「삼방의궤」 1728년 5월 일 품목, "一. 頒賜會盟錄四百九十二件內 … 印出楮注紙 … 衣次草注紙 … 戶曹, 工曹, 長興庫, 司贍寺 …"

76) 의궤 하권, 「삼방의궤」 1728년 5월 일 품목, "一. 原從錄券八千七百七十八件內 … 印出紙地段, 戶曹卜定紙三千卷, 司贍白休紙一萬八千三百五十六卷十五張, 衣次楮注紙三册一張式 …"

인다. 따라서 과거에 백지로 인출했던 녹권을 사섬시의 백휴지로 바꿔서 인출하도록 하고 종이 값은 역적 집안의 재산으로 호조가 변통하게 하였다.[77] 그러나 호조도 역적 집안의 재산을 몰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무녹훈도감에 역적 재산의 몰수를 떠넘기려 하였다.[78] 분무녹훈도감은 이에 반발해서 호조가 종이 값을 감당하도록 임금의 제가를 받지만 결국 호조가 종이 값을 감당하지 못하여 우선 공인이 감당하고 차후 역적 집안의 재산을 팔아 수량을 채우도록 하였다.[79] 이 같은 방법으로 8,779건의『원종공신녹권』인출지가 마련되었다.

인출을 위한 종이가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인출 작업이 시작되었다. 책지와 달리 표지는 별도로 제작되었다. 진상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서 제작 과정을 알 수 없다. 반사건『회맹록』과『원종공신녹권』의 표지는 저주지를 황색으로 염색하여[80] 大竹에 새끼줄을 걸고 말려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81] 말린 표지는 배접하고 綾花推造軍이 표지에 능화문을 넣었다.[82] 또한 인출을 위한 장소

---

77) 의궤 하권,「계사질」1729년 2월 15일,“都監啓曰, 取考謄錄, 則原從錄券印出紙地, 例以逆家財產取用, 而一等及朝士, 折衝以上已行邊將, 掖庭所屬, 政院禁府下人外, 其餘各捧紙地, 印出以給矣. 今當依此擧行, 而第都巡撫出征將士及各營出陣將校軍卒, 諸道斬賊擒賊有功勞之類, 決不可混捧紙價, 雖欲徵捧, 知委各道, 其勢亦難一齊收聚. 至於宮城扈衛將校, 軍兵, 當捧紙地者, 區別抄出, 則不過數千餘人, 雖捧紙地, 厥數不多, 其所有無, 不甚關重. 而第昨年扈衛風餐露宿, 殆過旬月, 不可與庚申數日扈衛者比而論之, 其在恤兵之道, 亦不當依例捧紙. 且念曾前則以白紙印出, 而今番則錄券數多, 地部經用亦不可不念, 以司贍寺白休紙代捧, 則物力半減, 而亦可堪用矣. 稍降紙品, 則地部可以免許多之費, 而不捧價錢, 則軍民庶可蒙一分之惠. 今此錄券印出紙地, 一併勿捧於參錄之人, 以白休紙, 量入進排, 而價本則以逆家財產推移上下, 實合事宜. 以此分付該曹, 何如?”

78) 의궤 하권,「계사질」1729년 2월 18일,“戶曹啓曰 … 逆家財產, 雖有籍入之事, 元無着實捧入之數. … 自都監特遣差人, 取其地所在湖南三百餘石及嶺南二百餘石, 又査出各官所隱漏者, 一併貿紙, 足以取用. 若或不足, 則京中所在逆賊家舍諸司未劃給者, 自都監遣人摘奸, 取其價高可賣者, 發賣取用之意, 分付都監, 何如?”

79) 의궤 하권,「계사질」1729년 2월 18일,“今此不當恤之地, 又爲靳惜, 至使地部當行之事, 勒令都監而替行. 錄勳莫重之役, 以致遷就而不成, 揆以道理, 未知其如何也. 大抵逆家財產, 勿論京外, 皆屬地部, 則價本爲先推移, 出給貢人, 逆產追後斥賣, 以充厥數, 事理當然.”

80) 의궤 하권,「삼방의궤」1728년 5월 일 품목,“一. 頒賜會盟錄及原從錄, 衣次紙地爲先入染次, 該監良中, 捧甘出給, 何如?”

81) 의궤 하권,「삼방의궤」감결질,“頒賜會盟錄券, 原從錄衣次乾正時所用大竹二十箇及小索五巨里, 用後還下次, 進排事.”

도 정비되었다. 『원종공신녹권』은 인출 시에는 날이 추워 인출 장소인 충훈부 小廳과 大廳의 삼면에 바람막이를 설치하였다.[83] 인출 장소 마련 후에는 인출에 필요한 대·중 구리 인찰을 마련하였고[84] 신속한 인출을 위해 인찰판을 추가로 진설하였다.[85] 또한 녹권은 수급자에 따라서 먹을 달리하여 인출하였다. 진상건 『회맹록』은 大節眞墨,[86] 반사건 『회맹록』은 大節常墨,[87] 『원종공신녹권』은 松煙墨으로 인출하였다.[88] 그리고 먹을 갈 넓은 돌인 大磚石도 갖추었다.[89] 인출 작업에 대한 세부 업무는 의궤에서 확인되지는 않으나 수록된 업무 담당자의 역할을 통해서 역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출을 위해 종이를 분배하고, 인출에 필요한 글자를 읽어주고, 활자를 상판하고, 활자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 교정하고, 인출을 위해서 활자를 고르게 하는 등 각각 분담하여 인출 업무를 진행하였고 필요한 글자는 만들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90] 인출이 모두 끝나면 『회맹록』과 『원종공신녹권』은 각각 造紙署에서 도침하고[91] 장황하여 완성하였다.

---

82) 의궤 하권, 「삼방의궤」 1728년 5월 일 품목, "一. 頒賜會盟錄原從錄衣紙, 今方黃染褙貼爲如乎, 綾花推造軍, 每日七名式, 限十日爲先定送事, 捧甘何如?"

83) 의궤 하권, 「삼방의궤」 1728년 5월 일 품목, "一. 原從錄卷今方印出, 而日氣漸寒, 工匠等始役處所, 不可不造成土字是乎矣. 所入雜物實多有弊端乙仍于, 忠勳府小大廳當爲設役, 而三面亦爲遮風, 然後可以始役是乎等以."

84) 의궤 하권, 「삼방의궤」 1728년 5월 일 품목, "一. 印出時所用, 銅大引札二十四箇, 銅中引札二百六十四箇, 用後還下次, 捧甘戶曹, 何如?"

85) 의궤 하권, 「삼방의궤」 1728년 5월 일 품목, "一. 當初印札板以十板磨鍊是如乎, 卽今役事一日爲急乙仍于, 印札四板加設, 則似合速完是如乎."

86) 의궤 하권, 「삼방의궤」 1728년 5월 일 품목, "一. 大殿世子宮進上會盟錄二件所入, 草注紙二卷十張, 大節眞墨二丁 …"

87) 의궤 하권, 「삼방의궤」 1728년 5월 일 품목, "一. 頒賜會盟錄四百九十二件內, 印出楮注紙每一件十八張式大節常墨每件一錢式 …"

88) 의궤 하권, 「삼방의궤」 1728년 5월 일 품목, "一. 原從錄券八千七百七十八件內, 印出紙地段, 戶曹卜定紙三千卷 … 松烟墨 …"

89) 의궤 하권, 「삼방의궤」 1728년 5월 일 품목, "一. 五部牒呈據, 本房印出時所用磨墨廣石, 論稟亦爲有臥乎所. … 大磚石五立, 自戶曹輸送事捧甘, 何如?"

90) 의궤 하권, 「삼방의궤」, "分紙唱准宋世熙等三人, 校正唱准池溟發等二人, 上板諸員金孝明, 守欌諸員徐文煥等七人, 印出匠趙先等八名, 刻手匠尹世東等三名, 均字匠李乙丑等五名, 造字匠一名."

두 녹권의 완성 시기를 살펴보면 『회맹록』은 진상건과 반사건의 인출을 마쳐 함께 도침하고[92] 8월 27일에 『회맹록』을 장황하였으니 진상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보아서[93] 1728년(영조 4) 8월경에 제작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원종공신녹권』은 왕이 하사한다는 의미로 모든 책에 '施命之寶'를 안보하였는데, 1729년(영조 5) 5월 17일에 왕에게 올린 계사를 보면 한편으로는 책의 장황을 하고, 한편으로는 어보를 안보하고 있으나 아직 수천 여 권의 장황이 안 되어서 며칠을 더 허비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94]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원종공신녹권』은 『회맹록』이 완성된 지 한참 후인 1729년 5월경에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의궤의 수록 내용과 실제 녹권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상건 『회맹록』은 대전과 세자궁에 진상되기 위해서 2건이 제작되었다. 초주지로 격지와 책지를 갖췄고 대절참먹으로 인출하였고, 표지는 저주지로 배접한 草綠大段에 백릉으로 제목을 갖추고 桃紅方絲紬로 테두리를 붙이고 眞紅絲로 제책하였다.[95] 반사건 『회맹록』은 충훈부에 올릴 1건을 포함하여 492건이 제작되었다. 저주지로 격지와 책지를 갖췄고 대절상먹으로 인출하였고 冊衣는 초주지를 황염한 후에 뒷면을 休紙로 배접하고 저주지에 제목을 인출하여 붙이고 紅鄕絲로 제책하였다.[96] 『원종공신녹권』은 충훈부에 올릴 1건을 포함하여 8,778건이 제작되었다. 책지는 백휴지로 갖

91) 의궤 하권, 「삼방의궤」 1728년 5월 일 품목, "一. 今此進上會盟錄及頒賜會盟錄, 旣已畢印爲有等以, 搗砧次, 出往造紙署爲去乎 … 一. 原從錄券旣已畢印爲如乎, 搗砧次出往爲去乎."

92) 의궤 하권, 「삼방의궤」 1728년 5월 일 품목, "一. 今此進上會盟錄及頒賜會盟錄, 旣已畢印爲有等以, 搗砧次, 出往造紙署爲去乎."

93) 의궤 하권, 「계사질」 1728년 8월 27일, "會盟軸已爲繕寫, 會盟錄券亦旣印粧, 各盛櫝子進上之意, 敢啓."

94) 의궤 하권, 「계사질」 5월 17일, "原從錄券安寶, 庚申前例, 亦至累日, 而今番錄券, 比庚申不啻倍篋, 則勢難一二日內盡爲安寶. 故以此意, 昨已啓稟, 一邊粧績, 一邊安寶矣."

95) 의궤 하권, 「삼방의궤」 1728년 5월 일 품목, "一. 大殿世子宮進上會盟錄二件所入, 草注紙二卷十張, 大節眞墨二丁, 衣次草綠大段全幅二尺, 雙隔紙草注紙四張, 衣後褙楮注紙四張, 題目次白綾長六寸廣四寸一片, 桃紅方絲紬長六寸廣一寸一片, 眞紅絲各一錢, 捧甘取用, 何如?"

96) 의궤 하권, 「삼방의궤」 1728년 5월 일 품목, "一. 頒賜會盟錄四百九十二件內, 印出楮注紙每一件十八張式, 大節常墨每件一錢式, 衣後褙休紙十冊六兩式, 作膠次燒木二十丹, 衣次草注紙三冊一張式, 隔紙楮注紙每一冊一張式, 紅鄕絲每冊五分式, 眞末十冊一升式, 題目次楮注紙十三張 …"

췄고 송연묵으로 인출하였고 백휴지로 배접한 저주지로 표지를 갖추고 저주지에 제목을 인출하여 붙이고 紅鄕絲로 제책하였다.97) 녹권은 모두 금속활자인 무신자로 인출되었다. 실제 간행본을 살펴보면 반사건의 경우 의궤의 내용과 달리 책사를 홍진사로 장정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다음에 살펴볼 녹권의 배포, 재배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녹권이 지속적으로 수정되면서 개장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 진상건 회맹록(上左, 장서각 소장), 반사건 회맹록(上右, 규장각 소장)
원종공신녹권(下,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97) 의궤 하권, 『삼방의궤』 1728년 5월 일 품목, “一. 原從錄券八千七百七十八件內, 印出紙地段, 戶曹卜定紙三千卷, 司贍白休紙一萬八千三百五十六卷十五張, 衣次楮注紙三册一張式, 松烟墨, … 紅鄕絲每册五分式, 題目次楮注紙一張四十片式 …”

2) 녹권의 배포와 재배포

『이십일공신회맹록』과 『분무원종공신녹권』은 수록된 사람들이 이 책을 받은 후 친공신의 적장자 및 원종공신으로 증빙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수록 인물의 확정과 녹권의 배포가 상당히 중요했다. 무엇보다도 『회맹록』 492건, 『원종공신녹권』 8,779건, 총 9천 책이 넘는 책자를 모두 반사해야 했기 때문에 배포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회맹록』은 반사건과는 별도로 진상건을 우선 제작하여 대전과 세자궁에 각각 1건씩 올렸다. 진상건은 多紅大段으로 만든 보자기로 싸서 별공작에서 제작한 黑漆册匣에 봉안하고 또다시 금전지가 달린 겹보자기로 책갑을 싸서[98] 8월 27일 이후에 진상한 것으로 보인다.[99] 반사건은 인출을 먼저 마친 『회맹록』부터 반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반사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728년(영조 4) 11월에 배포한 『회맹록』을 다시 거둬들이는 사실로 보아서 『회맹록』은 1차적으로 1728년 11월 이전에 반사를 마쳤음을 알 수 있다.[100] 『원종공신녹권』은 1729년(영조 5) 5월 마지막 날부터 반사를 시작하여[101] 公私賤의 녹권을 인출하여 배포한 7월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02]

『회맹록』과 『원종공신녹권』의 반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680년(숙종 6) 숙종 때 경신환국으로 공신에게 수여한 녹권의 인출 및 반사

---

98) 의궤 하권, 「이방의궤」 1728년 5월 일 감결, "進上册匣二部所入雜物, 依謄錄捧甘取用, 何如? … 內裹次多紅大段袱二幅付各長一尺七寸 … 金牋紙次紙金二張… 外裹次多紅鄕絲段甲袱二幅付各長二尺五寸."

99) 의궤 하권, 「계사질」 1728년 8월 27일, "會盟軸已爲繕寫, 會盟錄券亦旣印粧, 各盛櫝子進上之意, 敢啓."

100) 의궤 하권, 「감결질」 1728년 11월, "右甘結爲, 知委擧行事. 今番會盟錄券中, 有論字改補之處, 同各員受去錄券, 一一知委, 無遺收納爲乎矣."

101) 의궤 하권, 「감결질」 1729년 5월 일, "今此原從錄券, 今月晦日爲始頒給爲如乎 …"

102) 의궤 하권, 「의궤도감등록」 1729년 윤 7월 감결, "雍正六年七月十五日, 左承旨臣李仁復敬奉傳旨, 奮武原從功臣公私賤口乙良, 竝只免賤爲良如敎敎是白置. 同原從錄券, 才已畢印頒降是乎等以, 今玆行會爲去乎 …"

때에는 인출 후에 착오가 있거나 인출 작업에 농간을 부릴 때를 대비하여 교정, 창준 및 上板 諸員 등에게 다짐[侕音] 문서를 받아서 올리고, 의궤청에서 숫자를 대조하여 奉上한 뒤 『회맹록』은 충훈부로 이송하여 배포, 『원종공신녹권』은 의궤청에서 배포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호구와 호패를 現納한 후에 내어주고, 외방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각도에서 行會하여 각 읍에서 명단을 만들고 色吏를 정해서 올려 보내게 하여 확인 후 반사하도록 하였다.[103] 따라서 분무녹훈도감에서는 반사 명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도에 감결을 보내어 녹훈된 사람들의 거주지를 작성하여 성책해서 달라고 요청하였고,[104]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군병 외에 향군으로 원종공신에 입참하는 이들의 성명과 거주지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105]

그러나 실제 이와 같은 노력에도 녹권의 반사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배포 방법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미 녹권이 거의 배포되었기 때문이다. 1729년(영조 5) 7월의 기록을 살펴보면 녹권 배포와 관련한 당시 경상도의 상황을 알 수 있다. 계획한 원칙대로라면 서울에서는 지방에서 온 색리에게 명단을 확인한 후 책을 배포하여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미 경상도에서는 녹권을 받아간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도감에서는 원칙대로 하기 위하여 배포한 녹권을 서울로 모두 환수하여 경상감사에게 내려 보내도록 하였다.[106]

---

103) 의궤 하권, 「삼방의궤」 1728년 5월 일 품목, "一. 會盟錄原從錄券印出後, 例爲頒賜爲如乎. 日後如有錯誤用奸之弊是良置, 依庚申年例, 校正唱準及上板諸員等處, 捧侕音所上是遣, 自儀軌廳一一照數捧上後, 會盟錄則移送勳府, 原從錄則自儀軌廳頒給. 而此時人心極其巧詐, 京中則戶口戶牌現納後出給爲旀, 外方則行會各道, 自各其邑使之修成册, 定色吏上送以爲憑考, 後頒給之地, 何如?"

104) 의궤 하권, 「감결질」 1729년 5월 일, "今此原從錄券, 今月晦日爲始頒給爲如乎, 參錄人居住成册, 修正來呈都監, 以憑後考受去之地爲乎矣."

105) 의궤 하권, 「감결질」 1729년 6월 일, "各軍門軍兵中, 京居軍兵外, 以鄕軍入參原從之類, 役姓名及居住, 成册修報亦爲有矣."

106) 의궤 하권, 「의궤도감등록」 1729년 7월 일 이문질, "慶尙監司狀啓內節該, 本道原從參錄人中, 錄券已受出者段置, 自該府一一還收, 與未分給錄券, 幷以沒數都封下送本營, 以爲一時分給之地事稟處據 …"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어보를 안보한 후 배포할 지역별로 녹권을 분류하고 있을 때 선산과 성주의 수령이 상경했다가 해당 고을 공신의 녹권을 모두 가지고 갔고, 參錄된 사람들도 일이 있어서 상경했다가 가지고 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은 녹권도 쌓아둘 수만은 없어서 여러 읍의 邸人들을 불러서 배포해버렸다. 그러므로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고자 하나 현실적으로 이미 배포해버린 녹권을 모두 서울로 올릴 수는 없었다. 도감은 차선책으로 수령해간 녹권을 경상감사에게 직접 바치도록 하여 확인 후 다시 배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07] 녹권의 배포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배경에는 『원종공신녹권』이 인출기간이 길어지고 어보의 안보와 장황이 함께 진행되는 등 여러 작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완성된 책도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회맹록』과 『원종공신녹권』이 배포되었음에도 배포 업무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두 녹권의 일부에 오류가 있었고 또 입록자들의 수정 요구도 있었기 때문이다. 배포한 녹권에 오류가 있어 회수, 수정한 경우는 1680년(숙종 6) 保社功臣의 녹훈과 1694년(숙종 20) 보사공신의 復勳의 사례[108] 및 이전의 謄錄에서도 확인되어 도감에서는 이를 근거로 업무를 진행하였다.[109] 녹권은 일반 서책과는 달리 공신임을 증명하는 증서이기 때문에 수급자의 정보가 정확히 수록되어야 했다. 따라서 입록된 인명의 오류를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대다수다.

---

107) 의궤 하권, 「의궤도감등록」 1729년 7월 일 이문질, "諸道中原從參錄之數, 嶺南居多, 安寶後, 秩秩區別, 抄出之際, 善山星州兩邑倅, 適爲上京是如可, 兩邑錄券盡數推去是旀, 同參錄者, 或有因事上京是如可, 推去亦多. 此外錄券, 則本都監該房, 旣已停罷之後, 一向留置有所未安, 卽招列邑邸人, 出付下送爲如乎, 卽今未分給錄券五十七券段, 都封下送本營, 而旣已列邑邸人之所受去錄券, 則還收上京, 亦有弊端. 試爲分付於各邑邸人處, 使之直納本營事, 分付爲去乎, 相考施行向事."

108) 의궤 하권, 「계사질」 1729년 7월 16일, "各處文書 修送下吏, 自各其衙門, 從重科罪之意, 竝爲分付, 而取考庚申及甲戌謄錄, 則原從錄券役姓名差誤處, 有改張安寶之例矣. 今亦依此例, 令政院改爲安 寶後, 分給, 何如? 傳曰, 允."

109) 의궤 하권, 「품목질」 1728년 11월 일, "且考謄錄則在前, 亦有誤字改給之例."

먼저 『회맹록』의 사례를 살펴보면, 1728년(영조 4) 11월에 寧社功臣 陽陵君의 許禧의 長孫인 許澈은 '禧'이 '嫡'과 발음이 같고 글자가 유사하여 '陽陵君許嫡長孫'으로 되어 이를 '陽陵君許禧長孫'으로 수정,[110] 翊戴功臣 李琮의 적장자 李炫은 선조가 '佐理'의 녹훈에 들어 있으니 두 글자를 추가,[111] 靖社功臣 宋時范은 『훈안』에 따라 '範'으로 기록하였으나 본가의 요청으로 '范'으로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112] 또한 『회맹록』 중에서 '論' 字를 改補해야 해서 『회맹록』을 수령한 관원에게 일일이 알려 빠뜨림 없이 거두어들이도록 하였고[113] 1729년(영조 5) 3월에는 『회맹록』에 들어가야 할 인물 대신 의도적으로 올린 단자의 다른 사람이 『회맹록』에 수록되어 고쳐달라는 요구도 있었다.[114] 이때 의도적으로 단자를 올린 인물은 체포되어 엄하게 추문되었다.[115] 이 사건은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임금에게 이미 진상한 『회맹축』은 고치지 않도록 하고 『회맹록』만 수정하도록 하였다.[116] 이와 같은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회맹록』이 수정되었다. 도감에서는 팔도의 관찰사들에 『회맹록』을 받아간 사람의 주거지와 성명을 수록한 關文을 보내어 통지하여 거두도록 하였고, 거둬들인 사람은 陳省狀을 갖추어 牒報하도록 하였다.[117] 도감에서는 녹권을 수정하여 다시 인출하기 위해 책지로 사용될 후백지를

110) 의궤 하권, 「품목질」 1728년 11월 일, "寧社功臣陽陵君許禧嫡長許澈呈單據, 題辭內, 考稟亦爲有等以, 取考文書, 則草册中, 以嫡長書塡中件, 則以長孫書塡啓下別單, 則以嫡長書塡爲有如乎, 大抵文書紛遝之中, 誤書落字, 不是異事, 而上項陽陵君名字適與嫡長之嫡, 體樣音響相同, 故謄移呼准之際, 不過無情落書之致是置."

111) 의궤 하권, 「품목질」 1728년 11월 일, "翊戴功臣琮嫡長李炫呈單內, 以爲其先祖又參佐理之勳是如, 佐理二字, 添入亦爲有旀."

112) 의궤 하권, 「품목질」 1728년 11월 일, "靖社功臣宋時范之范字, 一依勳府久遠, 勳案所載, 以範字印給矣, 本家以范字, 請改云."

113) 의궤 하권, 「감결질」 1728년 11월 일, "右甘結爲, 知委擧行事. 今番會盟錄券中, 有論字改補之處, 同各員受去錄券, 一一知委, 無遺收納爲乎矣."

114) 의궤 상권, 「연설질」 1729년 3월 7일, "李虎得單字, 則以爲渠是佐理功臣李克培, 平難功臣李廷立兩代嫡長孫, 而新頒盟錄中, 李克培嫡長, 以李顯垕稱名人無端入錄. 詳査改給云."

115) 의궤 하권, 「이문질」 1728년 12월 일, "爲相考事. 京居童蒙李虎得呈單據, 有嫡長卞別之事, 道內利川居, 忠義衛李顯垕稱名人, 急急搜捕, 定刑吏, 着枷上送, 以爲推問處置之地向事."

116) 의궤 상권, 「연설질」 1729년 3월 7일, "上曰, 此微細事也. 自勳府只於會盟錄改正可也."

마련하였고[118] 수정 부분을 별도로 인출하고 배포한 녹권을 거둬서 해당 부분만 교체하여 다시 장황하였다.[119]

한편 『원종공신녹권』은 입록자 명단이 8,000명이 넘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작성해서 보낸 문서를 감정, 抄錄하여 역과 성명을 대조하여 살핀 뒤에 인출하였다. 그런데 애초에 각처에서 보낸 성책된 문서가 하리들이 잘못 기록하여 보낸 것이어서 인출에 오류가 생겼다. 그러나 녹권이 이미 배포되었고 녹권을 수령한 이들이 녹권에 役의 명칭, 성명 등이 잘못되었다고 呈訴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일로 도감에서는 1729년(영조 5) 7월에 오류가 있는 녹권을 모두 회수하고 어보를 다시 안보하여 반사하는 것을 임금에게 아뢰어 허가받고[120] 8월에 녹권을 개장하여 어보를 안보할 물품을 갖춰 인출 업무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인다.[121] 이와 같은 상황은 수천 명이나 되는 인물의 이름과 役의 명칭을 각 지방에서 하리가 작성하여 成冊을 도감으로 올렸고 도감에서는 이를 草冊, 中冊, 別單으로 몇 번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레 실수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 도감에

---

117) 의궤 하권, 「이문질」 1729년 3월 일, "京畿江原忠淸慶尙全羅平安黃海等道了爲相考事. 新頒會盟錄中, 誤印改張事, 自都監, 已爲陳達蒙允爲有置. 錄券推去各人居住姓名, 關後錄爲去乎, 依此一一知委, 所受錄券, 卽速收捧上送爲乎矣, 所收各人等姓名, 具陳省牒報之意後錄, 各邑良中, 星火知委施行向事."

118) 의궤 하권, 「삼방의궤」 1729년 5월 일 품목, "一. 昨年頒賜會盟錄誤印處收聚改印事, 旣已定奪蒙允, 故依傳敎, 今方改張. 而會盟錄元數四百九十二卷, 每卷四張式, 合紙四十九卷四張是如乎. 同改印紙以好品厚白紙, 星火進排."

119) 의궤 하권, 「삼방의궤」 1729년 감결질, "今此會盟錄改張旣已印出爲如乎, 親功臣家及承襲封君家所納錄券, 一一告課請出, 一時收聚, 趁卽以爲改粧冊事."

120) 의궤 하권, 「계사질」 1729년 7월 16일, "都監啓曰, 今此奮武原從錄券, 一依各處修送文書, 勘定抄錄, 考准其役·姓名印出矣. 及其頒給之後, 參錄之人, 或云役名相左, 或云姓名差誤, 移文呈訴, 極其紛紜. 故更考各處修送文書, 則當初成冊書塡, 果有差誤處, 以至因此誤印之境. 莫重錄券文書修送之際, 不爲詳察, 以致許多誤書之弊, 事極駭然. 各處文書修送下吏, 自各其衙門從重科罪之意, 竝爲分付, 而取考庚申及甲戌謄錄, 則原從錄券役·姓名差誤處, 有改張安寶之例矣, 今亦依此例, 令政院更爲安寶後分給, 何如?"

121) 의궤 하권, 「의궤도감등록」 1729년 8월 일 감결, "今此原從錄券改張安寶爲去乎, 明日未明時, 所裹紅袱三件段, 待令于都監爲旅."

서 대체로 문서가 어지럽게 오고갈 때 잘못 써넣거나 글자를 빠뜨리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당상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보아[122] 도감에서도 당시 녹권의 오류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마지막 공신녹훈도감의궤인 『분무녹훈도감의궤』를 분석하여 조선후기 영조대 분무녹훈도감의 운영과 업무, 녹권 제작과 배포 과정을 살펴보았다. 비록 영조대, 분무공신에만 해당하지만 그간 『회맹록』과 『원종공신녹권』을 형태적으로만 접근한 연구에서 확장하여, 분무녹훈도감의 업무 파악을 통해 녹권의 편찬 배경을 이해하고, 녹권의 입록 대상 마련부터 편찬, 간행, 배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분무공신도감과 의궤도감의 전반적인 업무와 운영을, 후반부에서는 『회맹록』과 『원종공신녹권』의 간행과 배포에 집중하였다.

조선시대 국가에서는 중요 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기관인 도감을 설치하였다. 도감은 업무 수행 후 규모가 축소되어 의궤도감으로 전환되었고 의궤 편찬 후 모든 업무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분무녹훈도감의 의궤도감은 공신 관련 기록물의 제작, 배포 업무로 인해서 의궤 편찬이 지연되어 2년이나 업무를 수행하였다. 분무녹훈도감의 주요 업무는 첫째, 친공신과 원종공신의 선정과 상전, 둘째, 공신과 적장자가 참여하는 회맹제와 회맹연 개설, 셋째, 친공신과 원종공신에게 수여하는 교서, 녹권, 화상의 제작과 배포가 확인된다. 의궤도감의 주요 업무는 첫째, 『분무원종공신녹권』의 배포와 재배포, 둘째, 기공각 봉안 기록물, 현판 제작 및 봉안, 셋째, 『분무녹훈도감의궤』의 편찬과 반사 업무가 확인된다. 이와 같이 공신 선정, 행사, 포상 등 주요 업무는 분무녹훈도감에서 추진하고, 공신 관련 기록물 생산,

---

122) 의궤 하권, 「품목질」 1728년 11월 일, “大抵文書紛遝之中, 誤書落字, 不是異事.”

배포 업무는 의궤도감에서 마무리지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궤도감의 주된 업무가 의궤 편찬이었으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업무를 겸하였음도 확인되었다.

『분무녹훈도감의궤』는 몇 백, 몇 천 책에 이르는 『회맹록』, 『원종공신녹권』의 편찬, 간행, 배포 과정을 통해서 국가 주도의 출판 업무가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의궤에서는 녹권 제작, 배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원종공신녹권』의 입록 대상이 8천 명이 넘었기 때문에 입록 대상 확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선정에도 오류가 있어 명단 선정 업무가 되풀이되었다는 것, 둘째, 녹권 책지 비용 마련 업무와 관련하여 도감과 호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 셋째, 녹권 간행이 삼방에서 단계별로 진행되었고 책에 따라서 책지와 먹 등을 달리 사용하였다는 것, 넷째, 녹권 반사를 위한 '施命之寶' 안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것, 다섯째, 『회맹록』과 『원종공신녹권』의 반사 절차가 정해져 있었으나 절차대로 배포가 되지 않았다는 것, 여섯째, 배포된 녹권에 오류가 있어서 회수, 수정, 장정, 배포가 반복되었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이 의궤는 국가 중심의 대량 출판 업무의 진행 과정과 시행착오를 보여준다.

요컨대, 『분무공신도감의궤』는 간행본인 녹권 자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녹권의 편찬 배경과 맥락을 보여준다. 의궤를 통한 녹권 연구는 기존의 형태서지학적인 연구에 집중된 간행본 녹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 범위를 보다 확장시켜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공신녹훈도감의궤 중 『분무녹훈도감의궤』 한 종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의궤에서 밝힌 내용을 일반화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이 의궤 분석을 시작으로 현존하는 『호성선무청난삼공신도감의궤』, 『호성선무원종삼공신도감의궤』, 『소무영사녹훈도감의궤』, 『녹훈도감의궤』, 『보사녹훈도감의궤』, 『보사복훈도감의궤』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연구로 국가 주도 공신녹권 편찬 및 간행의 전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논문투고일(2021. 4. 13), 심사일(2021. 5. 24), 게재확정일(2021. 6. 9)

참고문헌

1. 원문자료
『분무녹훈도감의궤』,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2. 연구논저
국립중앙박물관 편, 2012『조선왕조의궤 현황과 전망』, 국립중앙박물관.
박성호, 2015「조선시대 공신문서의 현황과 개요」, 『韓國古文書精選』 6,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옥영정, 2012「의궤의 서지학적 연구 성과와 편찬·간행 관련 기록의 활용」, 『조선왕조의궤 현황과 전망』, 국립중앙박물관.
정승민, 2005「朝鮮時代 功臣會盟錄의 書誌的 硏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나영, 2008「朝鮮時代에 刊行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硏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 2014「朝鮮 前期 功臣錄券의 書誌學的 硏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전자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의궤(http://www.museum.go.kr/uigwe)

Abstract

The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orate for Rewarding 'Bunmu' Meritorious Subjects and the Production of Certificates of Meritorious Subjects in the King Yeongjo period

Lee, Sangbaek *

Uigwe for Rewarding the "Bunmu" Meritorious Subjects (奮武錄勳都監儀軌) is the official document on the process of rewarding and bestowing the title of "Bunmu" ("meritorious subject") to officials who helped suppress the revolt of Yi Injwa (李麟佐, ?-1728) in the 18th century.

This study focused on researching two functions based on records of Uigwe. Firstly, the author investigated operations of the temporary directorate established for the national task. Secondly, the researcher examined the process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ertificates to officials.

The directorate operated from 1728 to 1730 and performed different tasks depending on the time period. Firstly, the organization managed selecting meritorious officials, holding the national event, and producing portraits and certificates. After completion of these main tasks, the organization worked for distribution of certificates and compilation of Uigwe.

Since more than 9,000 certificates were produced, it took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produce the records and errors occurred frequently. In addition, certificates were not distributed to officials according to the procedure meaning errors were also identified in the distributed certificates. Therefore, the collection, correction, and distribution of Uigwe were often repeated.

As such, the *Uigwe for Rewarding the "Bunmu" Meritorious Subjects* shows the process

* Curator,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and trial and error of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records at the national level in 18th century.

Key words : Meritorious Subjects, Directorate for Rewarding and Bestowing Meritorious Subjects, *Uigwe for Rewarding Meritorious Subjects*,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Issued to Major Meritorious Retainer*,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Issued to Minor Meritorious Retainer*